

#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41호

의 안 명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결 정 일 2022. 12. 5.

## 주 문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5일

위 원 안 성 욱

위 원 김 태 규

위 원 김 기 표

위 원 박 계 욱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별 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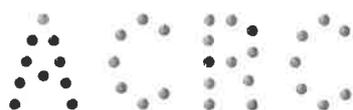
##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

2022. 12.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b>I. 추진개요</b> .....	<b>1</b>
<b>II. 현 황</b> .....	<b>2</b>
<b>III. 문 제 점</b> .....	<b>5</b>
(1) 원가산출·시장조사 없이 보조금 산출 .....	5
(2) 실물 확인 없이 보조금 지원 .....	7
(3) 전기이륜차 정기 안전검사 제도 미흡 .....	8
(4) 보조금 사후 확인제도 부재 .....	11
<b>IV. 개선방안</b> .....	<b>16</b>
(1) 보조금 산출기준 명확화 .....	16
(2) 철저한 차대번호 관리를 통한 보조금 지급 처리 .....	19
(3)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 .....	20
(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후관리 제도 보완 .....	22
<b>V. 조치사항</b> .....	<b>27</b>
붙임 1.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28
붙임 2.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	38
붙임 3.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	40
붙임 3-1. [별표4] 전기이륜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	41
붙임 4.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43
붙임 5.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샘플) ..	46



# I. 추진개요

## □ 추진배경

- 경북 칠곡군 전기이륜차 제조업자가 차대같이, 중요부품 변경, 차량 판매없이 배터리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조금 약 83억 1천여만원을 편취  
(’20. 5월 부패사건 신고)

-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국내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추진
  - ※ 국·지방비 각각 50% 부담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140~300만원 지원  
(구매액 대비 경형 50%, 소·중형 55%, 대형·기타형 60% 지원)
  - ※ '12년 ~ '21년까지 약 5만여대 지원, '22년 2만여대 약 360억원 지원 예정
- 서류 위주 심사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 저가 중국산 차량을 국산 차량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차대번호를 교체하여 이중으로 지원받는 등 보조금 불법 수령사례 지속 발생
  - 지자체 등은 인력 부족, 지침 불명확을 사유로 불법 보조금 수령 사례,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등 위반사례가 발생함에도 이를 확인·점검, 보조금 환수 없이 예산 집행업무에만 치중
- 이에 따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대기질 개선·신기술 개발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 추진경과

- '22. 6 ~ 9월            현황 및 실태조사
- '22. 10 ~ 11월        개선방안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22. 11 ~ 12월        분과위, 전원위 안건 상정

## II. 현 황

### □ 사업개요

- (사업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신고할 경우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지자체는 개인, 법인·단체 구매시 수량 제한 및 사업목적 증빙 서류(사업계획서 등) 등에 대한 조건 부여 가능
- (지원차량) 관련법령에 따른 전기이륜차('22년 기준 41개사 106개종)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지원기준)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동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유형·규모별 최대 140~300만원 지원, 국비, 지방비 50:50 부담)
  -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 유형별·규모별 최대 지원액('22년 기준) >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40	270	300	300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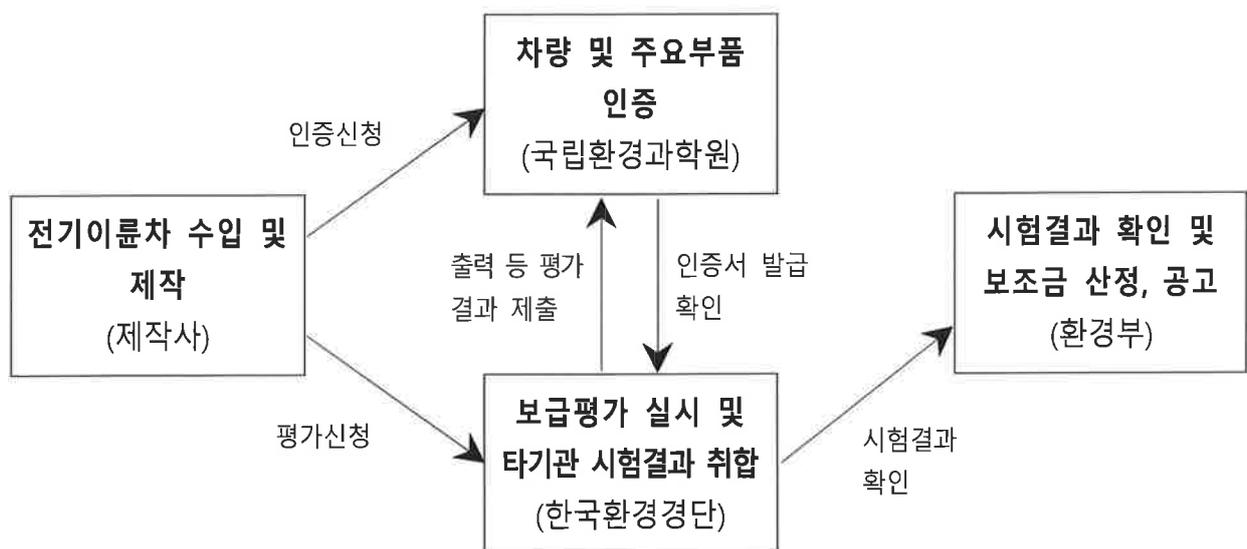
## □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관리, 보조금(국비) 예산 배정·정산,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환경공단) 보조금 시스템 운영, 보급대상 차량 평가(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
  - ※ 대구기계부품연구원(대구), 한국자동차연구원(광주)에서도 별도 평가 실시
- (환경과학원) 보급대상 차량 인증(관련서류, 차량번호, 모터출력, 주요 부품번호 등 확인·인증) 업무 수행
- (지자체)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예산 집행·관리

##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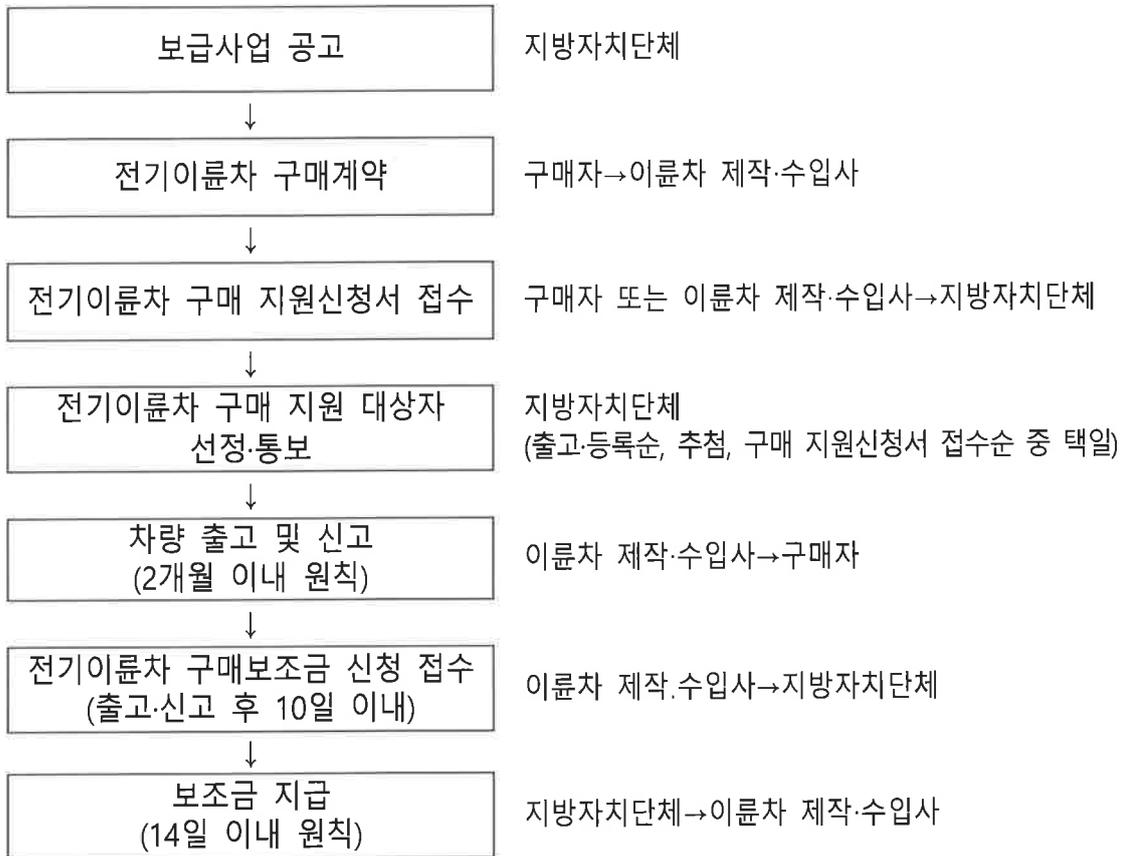
- (지원차량 선정절차) 차량인증, 보급평가를 거쳐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고 대상차량 선정·공고

< 보급평가 등 지원차량 선정절차 >



- (보조금 집행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보급평가 등 지원차량 선정절차 >



□ 지원현황

- '12년부터 '20년까지 약 3만여대를 보급을 지원하였으며, '21, 22년에도 각각 국비기준 약 180억원(2만여대) 지원 예정

< 연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대수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	57	89	92	125	780	3,975	11,886	14,005	16,858	20,000 (예정)

### Ⅲ. 문제점

#### 1 원가산출 · 시장조사 없이 보조금 산출

##### □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보조금 지급액 산정

- 보조금 산정 시, 시장·현장 조사 없이 보조사업자 제시 금액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비율을 산정하여 과도한 보조금 지급
- 수입제품 가격 대비 국내 시장가격이 훨씬 비쌌에도 업체 제시 금액을 기초로 보조금 지급액 규모 · 비율 산정

##### 【'20. 10월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자료】

-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지급된 국내 보조금이 230만원 수준('20. 10월 언론보도, 산자부 국감자료)

- 전기이륜차 구매가격은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으로 산정되므로, 차량가격이 높을수록 보조금도 높아지는 문제 발생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 ×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규모·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합계는 규모·유형별 최대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기타형
연비(25%)	35	60	67	75
배터리(40%)	56	96	108	120
등판(35%)	49	84	95	105
최대보조금	140	240	270	300

- 모든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50:50의 지원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외국부품을 수입, 단순 조립·판매함에도 비슷한 규모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업체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20. 10월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자료]**

- 중국 수입 완제품이거나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바꾸치기한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이 '19년 전체 보조금 275억원중 52%인 143억원에 달함

- 저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임의 변경한 후 보조금을 수령, 무상 또는 폭리로 재판매되는 사례도 발생

**['21. 8월 언론보도]**

- 관세청이 100~200만원 수준인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350~400만원짜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조사 착수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액 대비 과도한 예산 지원규모가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 야기
- 전기 자동차 지원액은 최대 국비 700만원(차량가액 5,500만원 미만)으로 12.7%(최대)를 지원하나, 전기이륜차는 약 40~50% 규모 지원

**【전기이륜차 모델별 보조금 규모(예시)】**

(만원, %)

구 분	모델명	판매가격(a)	보조금(b)	비율(b/a)
경형	EG300N	290	112	38.6
소형	UECO-H2	424	204	48.1
대형·기타형	E-SKO TRI	486	291	59.9

(자료 : 환경부)

## 2

# 차량등록 신고 시 실물 확인 없이 보조금 지원

### □ 차량등록 신고 시 이륜차 실물 미확인

- 이륜차 관리업무를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륜차 실물 확인 의무가 없어 서류만 확인하고 사용신고 처리

※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없이 운행할 경우 불법운행으로 처벌 대상이므로 사용신고서, 이륜차제작증, 제원관리번호통보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서류만 확인

< 보조금 지급 서류 샘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small>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4항 &lt;개정 2017. 10. 28 &gt;</small> <b>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b>		<small>별첨: 제72조제2항 제1호 &lt;개정 2007.8.7&gt;</small> 제 210507-001 호 <b>이 륜 자 동 차 실 측 확 인 서</b>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세대)전화번호	재 목 차 영 주 식 회 사 그 림 모 빌 리 타	제 려 자 동 차 인 호 X57		
차명 (에서 : 대이스파 250) <b>JANBORI</b> 시동 전거지 (부안용매지, 영인 용의 후 사무소 또는 지점) <b>강진도 이점서</b>	최대기량 또는 최고출력출력 <b>11V/40kw</b>	신 청 연 행 명 ( 대 표 지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릉읍 덕곡노출동로 16 (전화번호 : 053-811-1493 )			
		차 명 <b>JANBORI</b>	형 식 <b>합 식</b>	<b>ETDJ-1.0</b>	
		승 차 경 령 <b>1+0-1</b>	연 동 기 형 식 <b>ZD</b>		
		이 륜 자 동 차 최 대 허 재 량 <b>100</b>	제 기 령 또는 최고출력출력 <b>2.4/3300</b>		
<small>「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s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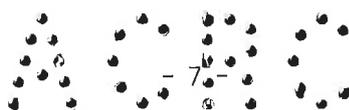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과정에서도 이륜차 실물 확인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만 확인

- 이에 따라 실제 전기이륜차 구매 없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

### 【'21. 8월 언론보도】

- 전남의 한 전기이륜차 판매업체가 '18년 ~ '19년까지 제주도에 있는 지사에 전기 이륜차 150여대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한 대당 보조금 350만원 안팎, 총 5억 8천만원을 편취



### □ 전기이륜차는 자동차 검사대상에 미포함

○ 이륜차는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 이륜차는 배출가스 등이 없어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이륜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서만 정기검사 실시,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 등이 없어 검사 제외

※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성능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나, 전기이륜차는 제외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등 차량 성능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이륜차는 이마저도 미실시

- 이륜차 관리 문제 해소를 위해 '21년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전기이륜차는 제외

※ 불법 튜닝 등에 따른 안전기준 미인증 부품 사용, 정비 불량 등 이륜차 결함 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한계

**【(관계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21.9))**

- (문제점) 불법 튜닝, 정비불량 점검을 위한 정기 안전검사 제도가 부재\*하여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 관련 용역(‘15.5~‘18.6)을 통해 제동·전조등 시험기 등 검사장비를 개발했으나, 높은 장비 가격(약 6천만원), 검사소 확충 곤란 등 사유로 제도 도입 지연

- (개선방안) 교통공단 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20년 13.3만대)에 대한 육안검사 중심의 안전검사 실시(‘21년 하반기)

\* 주요장치 작동상태, 불법튜닝 등 검사항목 마련(‘22년 상반기) 및 검사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검사 관련 기능 추가

- 검사대상에 미포함됨에 따라 인증평가 시 제공된 전기이륜차와 실제 판매되는 전기이륜차의 부품이 다를 경우 적발이 어려움

**【‘21. 8 언론보도】**

- 전기이륜차 판매제품의 배터리, 계기판, 전동모터, 충전기 등을 변경했음에도 정부로부터 변경 인증이나, 변경 보조를 하지 않고 장기간 미인증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 진행

- 전기이륜차 제조원가에서 수입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등 보조금 인증평가 시 수행하는 샘플테스트\*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검사 제도 도입 필요

\* 업체가 제시하는 모델별 대표차량 1대만을 제품 인증·평가 실시

**【 전기이륜차 시장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시장규모	255억원	456억원	532억원
제조원가	191억원	296억원	346억원
수입부품 (비중)	109억원 57.1%	153억원 51.7%	173억원 50.0%

자료 :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선정하기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평가 결과 국산 대비 중국산 이륜차 적합률이 현저히 낮음
- 높은 중국산 부품 비중(50%) 및 수입 대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전기이륜차 대상 정기 안전검사 도입 시급

**【 전기이륜차 보급평가 적합률】**

구분		2019	2020	2021
평가대상(대수)		28	54	67
제조국가	한국 (비중)	12 (42.9%)	29 (53.7%)	36 (53.7%)
	중국 (비중)	16 (57.1%)	25(대만2) (46.3%)	31(대만1) (46.3%)
적합률	전체	32.1% (9대)	68.5% (37대)	77.6% (52대)
	한국	88.9% (8대)	56.8% (21대)	59.6% (31대)
	중국	11.1% (1대)	43.2% (16대)	40.4% (21대)

자료 : 한국환경공단

### □ 보조금·차량등록 부서 간 협력 미흡으로 사용확인 한계

- 구매자는 보조금 수령 이후 2년 이상 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실제 운행 여부 미확인
- 이륜차 등록부서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륜차 사용폐지, 폐차 등 사례가 발생하여도 보조금 지원부서에서는 알 수 없는 실정

#### 【지자체 실무 담당자 실태조사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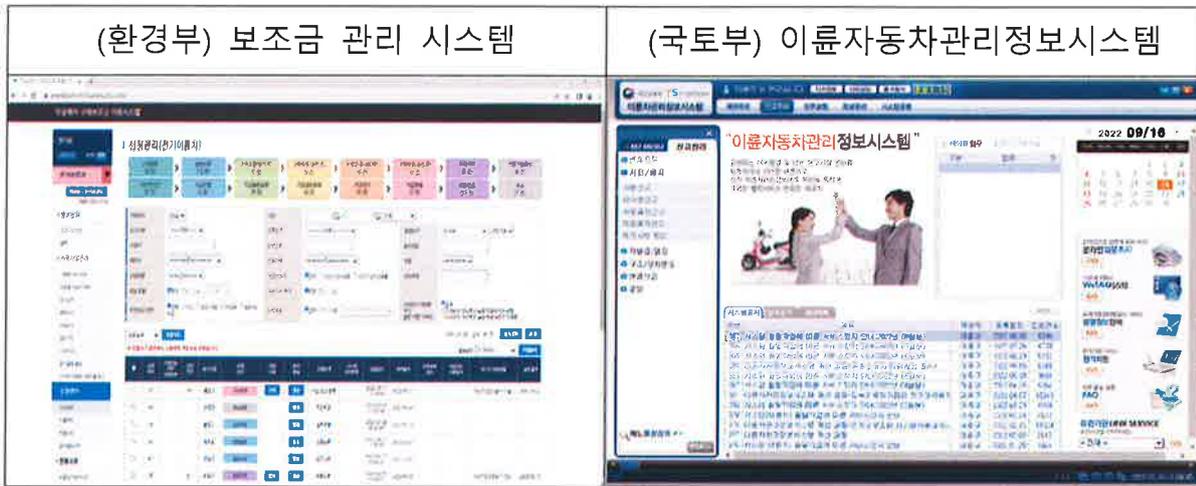
- (경남 합천) 이륜차 사용폐지 시 보조금 지원 여부 확인 없이 사용폐지 되어 지자체 승인 조항 유명무실
  - \*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 의무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 확인 후 폐차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경남 하동) 이륜차 구매보조시스템에서는 소유권 변동에 따른 체크 기능이 없어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 발생
- (경북 경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국토부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자료 관리가 어려우며, 소모적인 행정이 계속되고 있음
- (서울시) 이륜차의 경우 국토부 자료 조회 후 연동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차량번호, 차대번호 오류가 많고, 2년 이내 동일인 신청 이력 조회 불가
- (경기 이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과 환경부 보조금 관리시스템 간 연계가 되지 않아, 보조금 환수 대상인지 여부 확인 불가

#### 【'22. 8 광주광역시 전기이륜차 담당직원 의견】

- 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 이전·폐차 신고는 자치구 소관 업무이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

- 시·군 지자체 담당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처리 등을 위해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활용
- 읍·면·동 차량등록·이전 담당자는 국토부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보조금 담당자와 업무연계 불가

< 전기이륜차 업무처리 시스템 >



- 지자체 전기이륜차 관리현황 실태조사('17~'21년) 결과 조사표본 40,107건 중 의무운행기간인 2년 안에 사용폐지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건은 10,142건(25.3%)으로 집계

지자체 전기 이륜차 관리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다 철저한 보조금 관리 및 입력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담당자와 차량등록 담당자 간 업무 연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실태조사 결과 의무운행기간 중 발생한 변동 건 중 보조금 환수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사용폐지는 2,452건으로 보조금 지원액은 61억원으로 집계
- 또한, 의무운행기간은 준수하였으나, 지자체 간 이전으로 지방비 환수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단순주소이전(2,259건, 52억원), 소유자변경(3,775건, 90억원)은 6,034건으로 보조금 지원액은 142억원으로 집계

- 차량번호 및 소유자 불일치 등 단순 입력 오류는 351건으로 약 8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

< 지자체 전기이륜차 관리현황 실태조사 결과(건수)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b>합계</b>	<b>392</b>	<b>1,452</b>	<b>3,593</b>	<b>3,012</b>	<b>1,693</b>	<b>10,142</b>
단순주소이전	35	203	619	951	451	2,259
사용폐지	262	668	1,030	371	121	2,452
소유자변경	54	288	1,398	1,279	756	3,775
재사용신고	38	254	444	289	189	1,214
차량번호변경	3	9	31	32	16	91
기타 (기재오류 등)	-	30	71	90	160	351

< 지자체 전기이륜차 관리현황 실태조사 결과(금액/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b>합계</b>	<b>978</b>	<b>3,560</b>	<b>8,684</b>	<b>6,981</b>	<b>4,023</b>	<b>24,226</b>
단순주소이전	88	478	1,464	2,082	1,093	5,203
사용폐지	653	1,702	2,539	880	290	6,063
소유자변경	135	681	3,371	3,047	1,770	9,004
재사용신고	95	607	1,069	705	437	2,913
차량번호변경	8	21	75	73	40	217
기타 (기재오류 등)	-	73	166	193	394	826

## □ 차량·부품 임의변경, 폐차 등 변경사항 사후 확인 한계

○ 자동차 검사를 통해 구조변경, 부품변경 등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 위반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으나 전기이륜차는 사후 관리대책이 없는 실정

※ 전기자동차는 폐차 시 배터리 등 주요부품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 의무(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같은법 부칙 제17797호 제3조, 제8조)

- 지자체 간 이전 시 지방비만 환수하고 있으나 별도 확인·점검 절차가 없어 이용자의 문의 또는 자진 신고에 의존

※ 통상 전기이륜차 중고물품 거래 시 동일 지자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지자체 방문, 명의 변경 실시

- 지자체 간 이전 시 지방비 환수 규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발 시 환수 어려움 발생

### 【지자체별 전기이륜차 사업지침】

- (부산광역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로 한정)에게 인계(보조금 환수 조항 누락)
- (광주광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광주광역시에서 준수해야 함(보조금 환수 조항 누락)
- (제주특별자치도) 의무운행기간 2년 내 해당 차량 도외 반출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표1)에 따라 도비 보조금 환수 조치
- (평택시) 지자체 간 이전 관련 조치 및 환수 조항 누락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2년 의무운행기간을 명시하였으나, 미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규정 미비

- 환경부 지침에 보조금 환수 등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환수 조항 미비로 대부분 지자체 사업지침에도 환수 조항 누락

### 【지자체별 전기이륜차 사업지침】

- (환경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광주광역시)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광주광역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하고 차량등록 말소·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사용폐지 시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평택시)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평택시 사전 승인 필요

### 【지자체 실무 담당자 실태조사 건의사항】

- (경기 과천) 전기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시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조금을 받고 2년 이내 폐차하는 경우 발생
- (경기 구리) 2년 간 의무운행 조건이 있으나 관련 사항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제한 조건이 없어 의무 운행기간 실행 실효성이 없음
- (경북 경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 이륜차 폐차, 말소 시 보조금 환수에 관한 내용이 없음
- (제주시) 전기이륜차가 저공해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시 환수규정 부재로 환수에 어려움 발생
- (충남 보령) 의무운행기간 준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Ⅲ. 개선방안

#### 1 보조금 산출 기준 명확화

##### □ 보조금 지원 단가를 전기승용차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전기이륜차 판매가격 대비 보조금 지원율\*이 전기자동차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보니 야기되는 가격 부풀리기\*\*, 업체 배불리기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유사한 보조금 수준으로 전환 검토

\* 전기승용차 : 12.7%(국비기준, 최대), 전기이륜차 : 40~50% 수준

\*\* (언론보도)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지급된 국내 보조금이 230만원 수준

##### 【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정기준 】

- (전기자동차)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 (전기이륜차) 차량가격 등 기준가격 없이 연비, 배터리 등 규모·유형에 따라 최대지원액\*으로 산정하고, 지방비는 국비와 지방비 50:50 비율 유지
- \*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기타형 300만원

- 전기이륜차는 높은 보조율과 제조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산출 방식으로 인해 가격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어 전기승용차 수준으로 점진적인 보조금 조정 필요

##### 【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이 】

- 전기승용차는 보급대수 확대 등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보조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 개선 추세
- \* 전기승용차 최대보조금 : ('17) 1,400만원 → ('18) 1,200 → ('19) 900 → ('20) 820 → ('21) 800 → ('22) 700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개선방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2. 보조금 집행 기준							2. 보조금 집행 기준						
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구 분	유형	일반형				기타	구 분	유형	일반형				기타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 지원액 (만원)	140	240	270	300	300		최대 지원액 (만원)	130	220	240	270	270
							※ 보급상황 및 지원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인 보조금 조정 검토 * '23년 전기이륜차 지원단가 고려 ('22) 1.8백만원→('23) 1.6, △11.1%)						

○ (중장기 정책제안) 전기이륜차 '기준 가격' 산정

- 높은 보조율(40~50%)로 인한 보조금 부담수령, 가격 부풀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통한 '기준 가격' 산정 필요

【 (예시) 기준가격 산정 방법 】

- 배터리 종류·용량, 주행거리, 등판 능력 등 동일 사양 또는 유사 사양의 국가별 판매 가격을 조사하여 산술평균(또는 최저가격) 가격으로 '기준 가격' 산출
- 보급평가를 신청한 전기이륜차의 '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 \* ex) 전기이륜차 사양 항목 기준, 시장조사 국가 산정, 가격 산출 기준 등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 또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시행 기준 마련

<개선방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p>2. 보조금 집행 기준</p> <p>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p> <p>○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p>	<p>2. 보조금 집행 기준</p> <p>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p> <p>○ <u>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기준 가격은 보조금 지원 기준과 시장조사 대상 국가 판매 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u></p> <p>※ 별표1 「보조금 산출방식」 또는 별도 기준가격 산출방식 신설</p>

## 2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철저한 차대번호 관리

### □ 전기이륜차 차대번호 관리 방법 변경

○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는 차량 1대 당 1개의 차대번호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실물 미확인에 따른 불법사례 예방을 위해 차대번호 관리 방법 변경

- 본·지점, 가족 간 거래 등 서류 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패널티 조항 명확화 및 차대번호 관리 시스템 보완

### ⇒ 국토부 「이륜차 차량관리시스템」 보완

■ 현행 국토교통부 이륜차 차량관리 시스템에서 차대번호 수정은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임의 변경이 가능  
차대번호 수정은 ①변경사유 별도 기재, ②담당 부서장급 이상 결재 후 수정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보완 조치 필요



###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개선방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p>2. 보조금 집행 기준</p> <p>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p> <p>○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p>	<p>2. 보조금 집행 기준</p> <p>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p> <p>○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u>일정기간(또는 0년 이상)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함</u></p>

### 3

##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

### □ 전기이륜차 대상 '안전도 검사' 실시

- 전기이륜차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여부 확인, 높은 중국산 부품 비중(50%)을 감안, 정기 안전검사(안전도 검사) 제도 도입 필요
  - 전기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기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법튜닝·미인증 부품 사용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또한, 낮은 보급평가 적합률과 차량 제조사 대비 상대적으로 영세 업체가 많은 산업 특성 상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 필요
- \* 최근 3년간 적합률 : 한국 - ('19) 88.9 → ('20) 56.8 → ('21) 59.6%  
 중국 - ('19) 11.1 → ('20) 43.2 → ('21) 40.4%

###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개선 방안 예시(자동차관리법 제43조)>

현행	개선 (예시)
<p><b>제43조(자동차검사)</b> ① 자동차 소유자 (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p>	<p><b>제43조(자동차검사)</b> ① 자동차 소유자 (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b>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도 포함</b>)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p>

현행	개선 (예시)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p>※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후관리 강화

□ 보조금 환수를 위한 회수요율 적용

- 전기이륜차 2년 의무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 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회수요율 적용 필요
- 또한, 지자체 간 소유권 변경(A지자체→B지자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금 환수 근거 마련 필요

【 '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 미준수 사유에 따른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은 '22.6.30일 보조금 접수 (신청) 건부터 적용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개선 방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p>2. 보조금 집행기준</p> <p>라. 의무 운행기간</p> <p>○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p>	<p>2. 보조금 집행기준</p> <p>라. 의무 운행기간</p> <p>○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p>

현행	개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 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li> <li>○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 폐지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 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li> <li>- <u>(신설)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아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의 사용기간 및 요율 적용)</u></li> <li>- <u>(신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u></li> <li>- <u>(신설)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lt;표&gt;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u></li> <li>○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 폐지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li> </ul>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 및 회수율 】**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개선 방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p><b>2. 보조금 집행기준</b></p> <p>라. 의무 운행기간</p> <p>○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p>	<p><b>2. 보조금 집행기준</b></p> <p>라. 의무 운행기간</p> <p>○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p> <p><u>매수자가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매도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 및 요율 범위 내에서 지자체 사업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u></p>

□ **전기이륜차 관리 시스템 연계·개선**

- 보조금 지급·정산을 위한 환경부 「보조금관리시스템」 과 차량 등록·관리를 위한 국토부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간 보조금 정보 연계를 통해 보조금 관리 및 정확한 등록정보 관리
  - 지자체 업무 담당자(보조금 vs 차량등록) 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연계로 보조금 사후 관리 체계 개선
  - 전기이륜차 차대번호, 소유자 등 등록 정보 입력 오류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정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관리 체계 개선

⇒ 환경부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토부 「이륜차 차량관리시스템」 연계

<개선 방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운영 현황</li> <li>- 환경부 「보조금관리시스템」 : 보조금 업무 처리 및 관리</li> <li>- 국토부 「이륜차 차량관리시스템」 : 차량 등록·관리에 한정</li> </ul> <p>☞ 시스템 간 정보 연계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운영 현황</li> <li>- 보조금 사후 관리에 필요한 ①차량등록 정보, ②보조금 수령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하여 보조금 및 차량등록 담당자 실시간 확인</li> </ul> <p>☞ 시스템 간 정보 연계</p>

□ 차량등록원부에 보조금 대상 여부 표시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원부에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
  - 차량등록원부(차량등록증)에 보조금 구매 차량을 표시하여 폐차, 명의변경 등 등록 변경 시 확인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국토부 “차량등록원부”에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륜차 차량관리시스템」 개선

<개선 방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미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별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등록원부 '비고'란 등에 표시될 수 있도록 「이륜차관리시스템」 개선</li> </ul> </li> </ul>

<차량등록원부 표시 예시>

(제3쪽)

1. 제원(구조)			
제원관리번호	21X570C004	차대번호	KR90R1Z3EMTX 57140
차명(형식)	JANGBORI	원동기 형식	ZD
총 중 량	285	기 통 수	78V
배 기 량	40Ah	연 식	2021
길 이	1920	높 이	1150
너 비	800	승 차 정 권	1+0=1
적 제 량	100	원동기 다 력	2.4/3300
비 고	전기이륜차 보조금 수령 차량 (의무운행 '24.12.03일까지)		

## IV.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중장기 정책제안' 사항은 조치기한 적용 제외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① 보조금 산출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이륜차 지원단가, 보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 조정</li> <li>⇒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li> <li>※ (중장기 정책제안) 전기이륜차 사양, 또는 유사 사양의 국가별 판매가격 등 시장조사 등을 통해 기준가격 산출 기준 마련</li> <li>⇒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시행 기준 마련</li> </ul>	2023.03. (환경부)
② 철저한 차대번호 관리를 통한 보조금 지급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대번호는 차량 관련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 보완</li> <li>⇒ 「이륜차 차량관리시스템」 보완</li> </ul>	2023.06.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패널티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li> <li>⇒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시행 기준 마련</li> </ul>	2023.03. (환경부)
③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이륜차 안전 및 보조금 사후 관리를 위해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li> <li>⇒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개정</li> </ul>	2023.06. (국토부)
④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후관리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업무 담당자 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li> <li>⇒ 환경부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토부 「이륜차 차량관리시스템」 간 정보 연계 체계 마련</li> </ul>	2023.06. (환경부,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차량등록원부에 보조금 지원 여부 표시</li> <li>⇒ 「이륜차 차량관리시스템」 개선</li> </ul>	2022.06. (국토부)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다.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18,000백만원(국비 기준)

**라.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여부 등)
- 한국환경공단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 운영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 관련 콜센터 운영
  - 보조금 지원 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 2. 보조금 집행 기준

### 가.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단체 구매시 수량 제한 및 사업목적 증빙 서류(사업계획서 등) 등에 대한 조건 부여 가능

### 나.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http://www.ev.or.kr))에서 열람

### 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함
  -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 모든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50:50의 지원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단, 지방자치단체 관내 소재 업체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40	270	300	300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소비자를 위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 수리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 주요 부품 :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부품의 수리·교체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공제) 증서 또는 증권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함
  - ※ 보험(공제) 담보범위, 가입금액, 보상기간, 보상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표2에서 확인 가능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판매 지역(광역시자치체 단위)에 대해 A/S 대리점을 지정하고, 예비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환경부에 해당 연도 3월초까지 증빙해야함.
  - 단, 업체들이 공동 A/S망을 구축·활용함을 환경부에 증빙하는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같음함.
  - ※ 증빙 내용, 증빙 방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3에서 확인 가능
- 단,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고의로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회피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라. 의무 운행기간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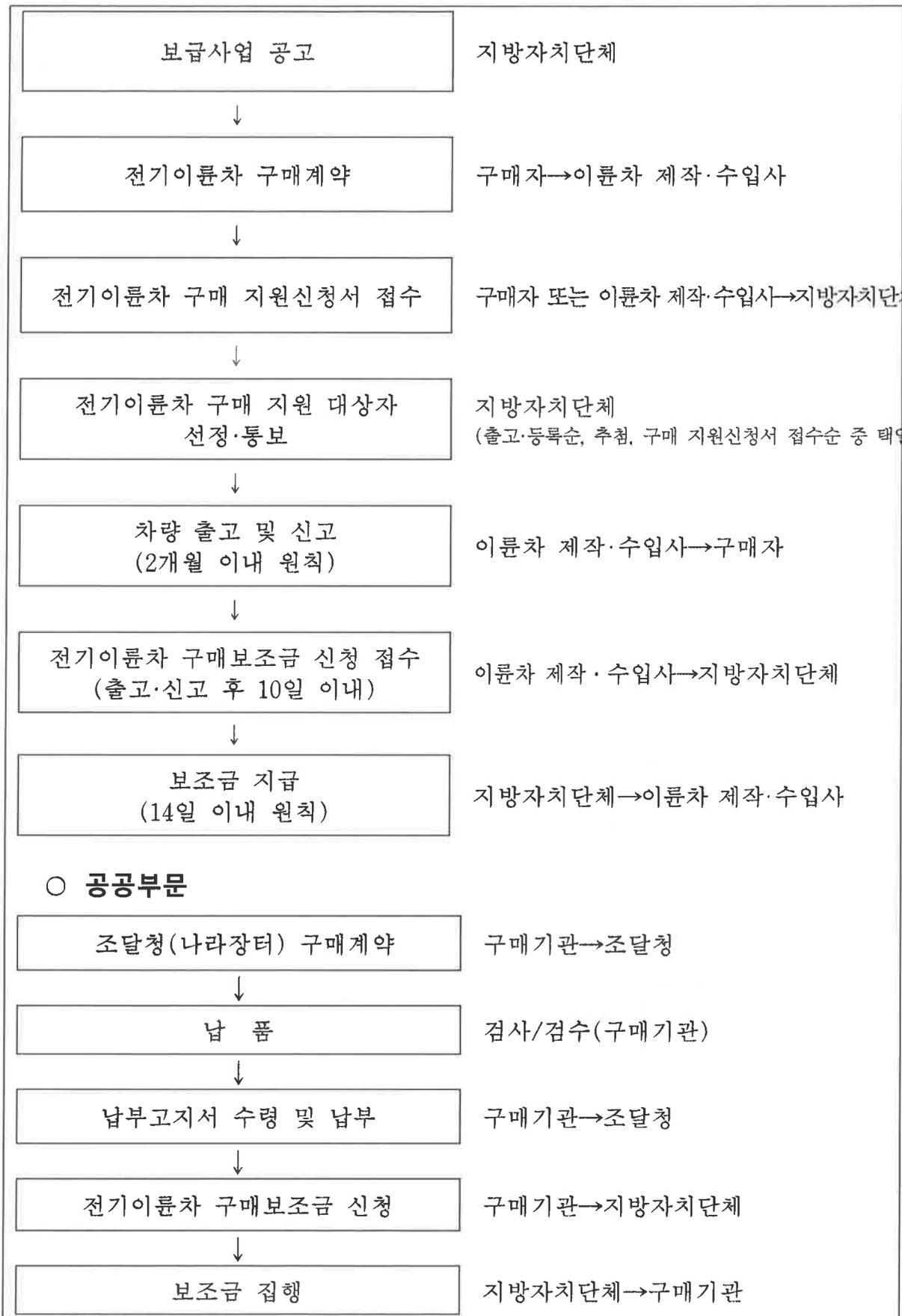
### 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이륜차 구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함.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3. 보조금 집행 절차

### 가. 보조금 집행 체계

- **민간부문**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 나. 보조금 집행 절차

### □ 기본 원칙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절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 시스템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만 함

### □ 민간 부문

#### ○ 보급사업 공고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
- 당해연도에 100대 이상 보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경우 당해연도 보급 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예. 상반기(3월), 하반기(7월) 등) 공고해야함
  - ※ 단, 1회차 공고한 일반물량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공고 여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
-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이 되어야함
  - ※ 다만,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기 곤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환경부에 증빙할 경우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단체(법인·기관) 구매요청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확약서 제출 등)를 반드시 포함
  - ※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다만, 업계 전체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는 기존 출고기한 한시 연장 가능

-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최초공고 후 4/4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 중 20% 이하로 단체(법인·기관)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 중 10% 이상으로 배달용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 단체(법인·기관) 물량 및 배달용 물량은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법인·기관)를 대상으로 대량 보조금 지원가능하며 자율적으로 물량 제한 가능함.

#### ○ 보조금 집행

- 제조·수입사는 출고된 전기이륜차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신고하면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서류(지방보조금이 있는 경우), 출고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증빙서를 검토 후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지정계좌의 수를 최소)로 보조금 지급(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 공공 부문

##### ○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2호의 신청서와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보조금 신청

-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시·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신청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환경부에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 공공기관에 시·군·구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공공기관에 시·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4. 보조사업 관리

#####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제작·수입사가 수리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시 이를 보완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나.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3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시 패널티 적용될 수 있음

#### 다. 보조사업의 완료 보고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함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text{연비보조금}(\text{규모별금액} \times \text{연비계수}) + \text{배터리보조금}(\text{규모별금액} \times \text{배터리계수}) + \text{등판보조금}(\text{규모별금액} \times \text{등판계수})$$

○ 연비와 배터리, 등판 보조금은 규모·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합계는 규모·유형별 최대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경 형	소 형	중 형	대형·기타형
연비(25%)	35	60	67	75
배터리(40%)	56	96	108	120
등판(35%)	49	84	95	105
최대보조금	140	240	270	300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최고 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 연비를 말함

\* 연비계수 = 가중연비 ÷ 최고가중연비

- 가중연비는 전기이륜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 상온(저온)연비 = 1 ÷ 상온(저온)소비율

- 최고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 중 상위 3개 차량의 가중연비의 평균을 말함

\* 최고가중연비 비교대상 차량은 2021.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기타형은 '승용형'과 '화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

- 배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배터리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배터리계수
    - \* 경형 :  $(0.35 \times \text{배터리용량}) - 0.05$ , 배터리용량 4.4kWh 이상 1.5
    - \* 소형·중형·대형 :  $(0.3 \times \text{배터리용량}) - 0.05$ , 배터리용량 5.0kWh 이상 1.5
- 등판계수는 보급대상 전기이륜 차량의 최고가중등판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등판을 말함.
  - \* 등판계수 =  $\text{가중등판} \div \text{최고가중등판}$
  - 가중등판은 전기이륜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등판능력을 말함
    - \*  $\text{가중등판} = (\text{상온등판} \times 0.75) + (\text{저온등판} \times 0.25)$
  - 최고가중등판은 보조금 지원 차량 중 상위 3개 차량의 가중등판의 평균을 말함
    - \* 최고가중등판 비교대상 차량은 2021.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 기타형은 '승용형'과 '화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시 차량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text{최소 자부담금} = \text{보조금(국비+지방비)} \times 50\%(\text{경형}), 45\%(\text{소형·중형}), 40\%(\text{대형·기타형})$ 
    -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 전기이륜차의 연비 및 배터리용량, 등판 등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4]

항 목	조건	차종 및 기준		
		일반형	기타형	
1.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40km 이상		
	저온	30km 이상		
2. 최고속도	상온	55km/h 이상	35km/h 이상	
	저온	50km/h 이상	30km/h 이상	
3. 가속도	상온	15s 이하		
	저온	17s 이하		
4. 최대등판능력	상온	20% 이상		
	저온	16% 이상		
5. 방전량 표시기 (BDI)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	5km 이상		
	방전량 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			
7. 충전기	충전 소요시간	급속	1시간 이내 완충 (선택적 부착)	2시간 이내 완충 (선택적 부착)
		완속	4시간 이내 완충	6시간 이내 완충
	충전상태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기 타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8. 자동차 운영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비고 :

1.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2.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3. "기타형"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4.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으로 한다.
6.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하여야 하고 인증 및 판매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차량과 구성이어야 한다.(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과 구성품을 사용하여 시험해야 한다.)
7. 방전량 및 충전상태 표시는 전체 배터리 잔량을 기준으로 한다.
8. 충전소요시간은 판매 시 제공되는 충전방식과 동일한 상태로 충전을 실시하여 전체 배터리가 충전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록된 시간으로 한다.
9.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 일반형(경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3.55	2.16	29.50	95
		SEBIA	22.40	3.02	29.30	110
		GXT-CITY	25.01	1.92	32.03	94
		VALENCIA-II	19.83	2.88	51.83	124
		GXT-II	26.07	2.10	37.80	104
		SEBIA-II	24.25	3.60	52.38	140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85
	와코	2K2(E5)	22.32	2.52	31.20	102
		2K2(E6)	28.07	1.68	40.25	101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0	24.23	91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138
	시엔케이	DUO ALPHA	21.31	2.02	50.48	108
	테라모터스	TM2	25.31	2.16	33.25	100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18.92	2.88	38.73	112
	디앤에이모터스	EG300	24.60	2.16	37.68	104
		EG300(모뎀)	23.14	2.16	36.78	101
		EG300N	24.07	2.49	41.00	112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26.67	2.10	27.48	96
		NIU-NCARGO	22.96	4.20	36.43	140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85
	하이시스로지텍	H1	24.53	2.77	45.78	123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21.25	2.88	33.53	110
	착한바이크 아울렛	PH-DA2	22.67	4.10	52.00	140
	이벡터	주노	27.95	1.92	38.85	104
		아폴로	26.49	1.92	37.05	101
	지에스모터스	BONO	28.62	2.88	46.23	130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CARGO	26.04	2.69	27.68	107
		ECOOTER E2	26.04	2.69	27.68	107
		ECOOTER E1S	27.29	2.69	30.15	110
	가브리엘	M6(ES1)	21.40	2.88	54.60	129
		H6(SS77)	22.60	2.88	56.95	132
	한국모터스	VS1	17.44	2.70	22.63	92
이오텍	DJ1	28.99	3.02	38.45	127	
코터스	KGM	22.58	2.30	26.80	94	

□ 일반형(소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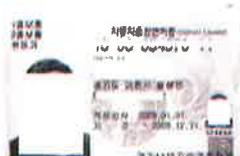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II)	24.32	4.56	23.60	212
		썬바이크(III)	21.60	4.56	39.75	228
	성지기업	WIND-K1	25.25	2.40	34.50	167
	그린모빌리티	SEBIA-PRO	22.08	3.89	47.98	222
		VALENCIA-PRO	18.63	3.60	51.75	211
		SEBIA-PROE	21.28	3.60	50.83	215
		GXT-PRO	28.20	2.10	37.58	169
	엠비아이	MBI-V(2.29kWh)	18.12	2.29	56.63	179
		MBI-S(2.29kWh)	20.58	2.29	44.20	167
		MBI-X(2.29kWh)	17.94	2.29	50.40	170
		MBI-X(4.26kWh)	19.42	4.26	52.70	233
		MBI-V(4.26kWh)	20.75	4.26	62.25	240
		MBI-S(4.26kWh)	21.19	4.26	54.63	240
	명원아이앤씨	FLETA	18.37	5.76	60.28	240
	엠엔에스피	M5000	23.41	4.32	39.25	225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	23.20	3.28	41.38	197
		GOGORO2 PLUS	24.47	3.68	42.23	213
	더좋은사람	C40	28.30	2.88	47.95	206
		C40A	30.01	2.88	49.85	212
	디앤에이모터스	EM-1	23.36	2.88	36.03	179
		EM-1S	25.34	2.94	35.95	184
		EG400K	24.39	2.49	43.28	180
		EG400	23.61	2.68	38.63	177
	태인아이씨티	UECO-H2	24.24	3.24	45.38	204
	와코	2K2(E7S)	21.40	3.24	52.25	207
		2K2(E6S)	22.63	3.24	50.38	207
	(주)시엔케이	DUO MAX	21.19	3.60	47.18	210
	브이스페이스	SUPER SOCO CPX	24.44	2.70	32.93	171
	(주)킴스트	DICE	23.43	2.88	57.55	209
	블루샤크코리아(주)	R1 Lite	19.75	2.88	47.60	187
	하이시스로지텍	에이치4프로	19.55	2.88	40.98	177
	코리아이브이	LIBERTAR-S	20.10	2.88	58.53	203
	에임스	LEO	24.98	1.80	46.10	165
	지우종합상사	E1S plus	26.92	2.69	29.00	171
E2 Plus		26.09	2.69	26.23	165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pro	20.12	3.60	36.23	193	
지에스모터스	TI	15.39	5.92	51.08	240	
젠트로피	ZENTROPY Z	21.76	3.41	62.40	227	
송과모빌리티이노베이션	Neuwai S1	22.85	2.80	58.53	207	

□ 대형 · 기타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3	26.83	252
		DELI-M	12.05	4.54	30.83	264
		DELI-T	12.08	4.54	30.83	264
		JANGBORI	14.02	2.88	29.83	211
		Motz Truck	10.10	3.89	33.53	248
		DELI-D4	11.25	4.53	26.28	261
		DELI-D5	10.84	4.54	36.68	281
		DELI-Q5	10.35	4.54	35.83	277
		JANGBORI-II	12.89	3.60	65.08	300
		DELI-D4E	10.32	4.32	25.65	248
	대풍이브리	Echo-ev2	10.60	4.08	22.75	227
		Nice-ev1L	16.87	2.89	43.60	249
		Nice-ev3L	21.81	4.08	31.20	300
	시엔케이	TRIO1	14.54	3.60	41.58	274
		TRIO	13.85	3.60	71.00	300
	성지기업	WIND-K2	18.35	2.40	44.25	238
	리스타트	S-V28	19.46	2.96	41.25	257
	앨비	SEMMA-K3	13.65	2.88	46.28	240
	디앤에이모터스	E-AT100	19.07	2.49	49.98	255
필립스이브리	딜리버	15.39	3.60	57.85	300	





**기획재정부장관**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국기날리와 함께  
국기날리와 함께

국기날리와 함께  
국기날리와 함께

국기날리와 함께  
국기날리와 함께

국기날리와 함께  
국기날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의용번호: 2101235-072454563  
(Certificate No.)  
수입인자금액: 3,000원  
상품명 (Sample): 기계장비  
생년월일/사업자번호: 기계장비  
명칭: 농축업  
발급일자: 2021.06.09  
(Certificate Issued Date)

**기획재정부장관**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 전자수입인지를 인쇄도 및 복사(Copy)하여 출력 사용할 경우, 조세할증 12% 지급액 2년 이하로 감세 또는 2배연월 이하의 감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전자수입인지는 3월 출석만 가능하게 한다(사실상 2월 말), 사용서를 1번의 인쇄금액을 100% 환불하여 사용합니다.
- 환불기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전자인사기록을 확인합니다.
- 환불기간에 환불하지 않고 차인(누산)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www.seamultar.gov.kr에서 전자수입인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부합한 경우를 확인합니다.
- 부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를 사용 및 판매가 불가하다(인쇄한 조인자의 취소가 불가하다).

**환불방법**

- 사용자가 1년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환급(환급)액의 97%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가 발급받은 경우 부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를 출력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제 412109-202106-10-000002 호

**이원자 통과  
사용신고필증**

청기표 이원시 설립면허

이원자 통과  
사용신고필증

이원자 통과  
사용신고필증

이원자 통과  
사용신고필증

이원자 통과  
사용신고필증

**이원자통과번호판 제작지시서**

제작지시번호		제 412109-202106-12-000002 호	
제작 내역	번호판사용관청	경기도 이원시 설성면	412109
	제작지시부청	경기도 이원시 설성면	412109
	용도기호	카	
	신 고	시 2345	
	번호	종 2345	
수량		1 개	

위탁자명 제작 지시사항

2021년 06월 09일

**경기도 이원시 설성면장**

번호판 발급대행자 귀중

정 본 입 니 다 .

2022. 12. 6.

국 민 권 의 위 원

